

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1. 26.(금)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43개 사업자 - (2010-69-284)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의거, '10년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

※ 수정내용 : 한국방송공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할 것' 부과

○ 주요 내용

① 재허가조건부 재허가 대상 방송사별 허가기간

-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은 한국방송공사 등 40개 방송사 318개 방송국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허가유효기간으로 재허가

심사 점수	허가 기간	재허가 대상 방송사
750점 이상	5년	도로교통공단(교통원주FM방송국)
700~750점 미만	4년	한국교육방송공사,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인천·부산·전주·광주·대전·대구 FM방송국),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등 4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650~700점 미만	3년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TV,FM), 대전문화방송(주), 창원문화방송(주), 목포문화방송(주), 부산문화방송(주), 삼척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TV), 여수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제주문화방송(주), 진주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주)SBS,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울산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기독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주)OBS 경인TV 등 36개 사업자 305개 방송국

※ OBS경인TV는 허가기간 통일을 위해 종료일을 '13. 12. 6일에서 '13. 12. 31일로 변경

- 심사결과 650점 미만인 5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조건부 재허가

심사 점수	허가 기간	조건부 재허가 대상 방송사
650점 미만	3년	(주)YTN라디오, (주)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AM, FM, 표준FM), 대구문화방송(주)(AM, 표준FM)

② 허가조건

< TV방송국 공통 허가조건 >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방송보조국 구축을 성실히 이행하되,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 -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계획대로 준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KBS 지역국, MBC 지역사, 지역민방은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할 것 ○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 연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사업자별 허가조건 >

구분	방송사	조건
650점 이상	KBS	·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할 것
	SBS	·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OBS	· 증자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650점 미만 (조건부 재허가)	청주 MBC	·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 방송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라디오 부문의 방송의 내용, 편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
	안동,대구 MBC	· 방송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라디오 부문의 방송의 내용, 편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
	경기방송	· 방송법 위반을 조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말까지 제출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
	YTN 라디오	· 증자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3월까지 제출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

③ 권고사항

< 공통 권고사항 >

구분	권고사항
KBS MBC SBS	·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심의제도를 내실화 할 것 · 과도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지역MBC	· 미디어랩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강화를 위한 방안을 2011년 3월까지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할 것
지역민방	· 미디어랩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영의 투명성 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것 -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제도 강화 -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 방송전문경영인(사장) 제도 도입·유지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 강화에 노력할 것
전문편성 사업자	· 미디어랩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자원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문편성을 강화하고 불편성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 사업자별 권고사항 >

구분	권고사항
KBS	·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할 것 · 지역국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자체제작 증대를 위한 방안을 2011년 3월까지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할 것
MBC	· 지역 MBC에 대한 과도한 배당요구를 지양하고,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 서비스 강화에 노력할 것
SBS	·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한 수준 이상으로 콘텐츠 판매 수익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매년 상세 거래내역을 포함한 이행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 ·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서비스 강화에 노력할 것
TBN,TBS 경기방송	· 과도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관련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④ 이행각서 제출 관련 사항

- (주)SBS의 최대액출자자인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 (주)태영건설과 그 최대주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함

이행 내용
· (주)태영건설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법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이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주)태영건설의 주식을 100의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대액출자자가 되는 주식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 (주)태영건설이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가 변경되는 주식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2)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0-69-285)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된 가구(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차상위 계층 중 지원 대상자 >

- 차상위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를 취약계층 지원대상자로 고시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자 포함)
 - 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는 자*

* 부처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가

3) 방송심의 제재조치 이행방법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리빙티브이 등 2개 방송사업자 - (2010-69-286~287)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조치 처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행 방법을 위반한 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사업자별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 >

법인명(채널명)	위반 내용	처분내용
(주)리빙티브이 (리빙TV)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 받은 사실을 기한을 경과(8일)하여 고지방송 (방송법 제100조제4항 위반)	과태료 250만원
(주)지텔레비전 (GTV)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주의'조치 받은 사실을 기한을 경과(6일)하여 고지방송 (방송법 제100조제4항 위반)	과태료 250만원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2. 2(목),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5:30)

※ 12:05 정회, 15:15 속개